

예산총칙

2024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,381,864,362	41,455,931
일반회계	1,235,339,539	37,060,186
특별회계	146,524,823	4,395,745
공기업특별회계	140,163,477	4,204,904
상수도사업특별회계	30,520,808	915,624
하수도사업특별회계	109,642,669	3,289,280
기타특별회계	6,361,346	190,840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2,655,515	79,665
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	43,717	1,312
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	802,000	24,060
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	186,673	5,600
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	2,289,241	68,677
지하수특별회계	384,200	11,526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,833,512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76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